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5
----------	------

발의년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김경환, 김영길, 이효상
김순점, 권태호, 강혜순
이복희, 오세라, 서경환

1. 개정사유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201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2018년도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금액 변경 (안 제2조)

○ (현재) 월 2,310,000원 ⇒ (변경) 월 2,390,830원

※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 3.5% 반영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규제사무심사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2017.11. 13. ~ 11. 19.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월2,310,000원”을 “월2,390,83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7] <신설 2008.10.8>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text{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 재정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특별시·광역시·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농복합시(0.023) / 군 (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 20 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연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안건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월정수당” 개정으로 인한 인상 비용추계금액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월정수당” 인상 예상 비용 : 10,670천원정도

(단위: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증 감
소요금액	304,920	315,590	10,670

3. 작성자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6급 정미옥

☎ 052-290-4213

【제6대 중구의회 의정활동비】

■ 법적근거

1.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비용 및 지급기준

1.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2. 비용의지급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내에서 의정비심의 위원회
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내로 하여 조례로 규정 (법제 22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심의)

※ 기획예산실-13344(2014.10.28.)호의 2015년~201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통보

■ 수당 등 지급금액 결정 절차

1. 인상 등 변동 결정(의회)
2. 여론조사 후, 심의위원회개최, 결정액 의회통보(기획예산실)
3. 조례개정(의회)

■ 연도별 의정비 계상내역

연도 별	의 정 비			비 고
	월정수당	의정활동 비	합 계	
2015년	25,924,800원 (월2,160,400원)	13,200,000	39,124,800	2014년 의정비 대비 4%인상
2016년	25,924,800원x'15년공무원보수인상률 (3.8%)=26,909,942원 26,910,000원(월2,242,500원)	13,200,000	40,110,000	2015년 공무원봉급 인상율 3.8% (행자부고시에 확인)
2017년	26,910,000원x'16년공무원보수인상률 (3%)=27,717,300원 27,720,000원(월2,310,000원)	13,200,000	40,920,000	2016년 공무원봉급 인상율 3%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1호)
2018년	27,720,000원x'17년공무원보수인상률 (3.5%)=28,690,200원 28,690,000원(월2,390,830원)	13,200,000	41,889,960	2017 공무원봉급 인상율 3.5%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7-1호)

합계금액 상한액 : 41,890,000원 초과불가
(※2018년도 합계액은 상한액에 보다 40원 적다)

<2018년 조례개정>

(2017년도 월정수당)

$$27,720,000\text{원} \times 3.5\% = 28,690,200\text{원} >>>> 28,690,000\text{원}$$

(공무원봉급인상율)

(지방자치법 별표7/ 나. 기준액계산 단서, 만원단위 연액에서 천원단위 반올림)

조례표기: 28,690,000원/12월 = 2,390,833.333 ⇒ 월 2,390,830원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시행 2017.1.25] [인사혁신처고시 제2017-1호, 2017.1.25, 제정]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8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2017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은 3.5%로 한다.**

